의 안 번 호	ই_	제	992	卜
의 결	1		•	•
연 월 일] ((제		회)

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송미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2년 3월 2일

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(송미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2

발의연월일: 2022년 3월 2일

발 의 자 : 송미애, 윤남진, 연종석

원갑희, 이상정, 이상식

이상욱

1. 제안이유

O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시키고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함

2. 주요내용

-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, 도민, 기업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,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5조)
- O 공유경제 활동을 통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~제10조)
- O 충청북도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 ~ 제14조)
- O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 청북도 공유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

3. **조례안전문** : 붙임

4. 참고사항

O 관계법령: 없음

○ 조례안예고 : 2022.3.7. ~ 2022.3.14

O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사회적경제과와 협의함

O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며,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공유경제"란 공간, 물건, 재능,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충청북도민(이하 "도민"이라 한다)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적·경제적·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.
- 2. "공유단체"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, 문화, 환경,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7 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.
- 3. "공유기업"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, 문화, 환경,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 한다.
- 제3조(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·시행한다.
 -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 및 출자·출연기관 등의 공공 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- ③ 도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한다.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

- 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- 1.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
- 2.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
- 3.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
- 4.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
- 5.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
- 6.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6조(공유경제 활성화 정책) 도지사는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· 보급
 - 2.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
 - 3.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및 문화 확산
 - 4.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, 구축·운영 지원
 - 5. 공유경제 관련 시·군, 단체, 기업, 기관 간 협력
 - 6. 도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
 - 7. 그 밖에 도지사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7조(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)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·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1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 - 2. 「민법」에 따른 비영리법인
 - 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
 - 4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 - 5.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

- 6. 「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
- 7.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·법인 및 기업
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요건,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- 제8조(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)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·법인 및 기업 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상담, 자문,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9조(보조금 지원)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·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- 제10조(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) ① 도지사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「충청 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및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.
- 제11조(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)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(이하 "위원

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기본계획의 수립 · 시행
- 2.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
- 3.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
- 4.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제12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담당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
 - 1.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(학계, 법조계, 경영계, 현장전문가 등)
 - 2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 - 3.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
 - 4. 비영리민간단체, 비영리법인,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서 공유경제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
 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-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직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제13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

-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.
-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·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4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 - ② 간사는 공유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- 제15조(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유 경제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 - 1. 공유경제 기본(실행)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
 - 2.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 - 3.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
 - 4. 공유경제 연구・조사 및 평가
 - 5. 주민 교육 ·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
 - 6. 공유경제 관련 단체·기관의 지원 사업
 - 7.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제16조(교육·홍보)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도 및 시·군 인터넷 홈페이지,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있다.
- 제17조(포상)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·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- 제18조(존속기한)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- 제19조(적용) 위원회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충청북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 전에 기여하고,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

3. 관련조문

-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
- 공유 기업 및 단체 지정 전 지원 및 보조금 지원(안 제8조, 제9조)
-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(안 제15조)
- 교육 및 홍보(안 제16조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도내 공유경제 기업 및 단체 지원 사례는 없으며,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신규 자체사업으로 추진함
- 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
-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은 5년 단위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함
- 공유경제 기업 및 단체 지정 전 지원 및 보조금 지원은 연간 10개소 내외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함
-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·운영은 위탁운영을 전제로 하고, 센터운영 인건비(3명), 공유경제 컨설팅(연간 100명), 도민교육(연간 200명), 공유경제 홍보 사업(신문·방송 광고, 사업 홍보물 제작 등)을 추진함

나. 추계 결과 : 1,760백만원(5년간)

-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: 50백만원(1회)
- 공유경제지원센터 운영비* : 연간 177백만원(인건비 3명, 운영비)
 - * 중소기업진흥원 內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 기준

· 인건비 : 팀장급(재단 5급, 4,900천원×12×1명), 직원(재단 6급, 3,700천원×12×2명)

(단위: 백만원)

- · 운영비 : 30백만원(사무실 운영비, 공과금 등)
- 공유경제 컨설팅(연간 100명) : 25백만원(5백만원 × 5회, 회당 20명)
- 공유경제 교육(연간 200명) : 20백만원(5백만원 × 5회, 회당 40명)
- 공유경제 홍보사업(신문·방송 광고, 사업홍보물 제작) : 연간 20백만원
 - · 광고 10백만원(4회 × 2.5백만원), 홍보물·책자 제작(2회 × 5백만원)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/ 조례 내 세부사업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(세출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
기본계획 수립	50	50	_	_	-	-
공유단체·기업 지원	500	100	100	100	100	100
공유경제지원센터 운 영	885	177	177	177	177	177
교육(컨설팅) 및 홍 보	325	65	65	65	65	65